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상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1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28일

발 의 자: 이상욱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영철, 김원중,
김재진, 김태수, 남궁역,
남창진, 박 석, 서상열,
유정인, 이종환, 이효원,
임규호, 장태용, 정준호,
채수지, 최민규, 허 훈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0명)

1. 제안이유

- 인구구조 변화(저출산·고령화)에 대비하여 공공기여 시설에 공공산후조리원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, 지자체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자 함.
- 기존 공공청사,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공익시설(각종 지원센터, 키즈카페 등)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담을수 있는 포괄적인 시설 용도를 추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저출산 고령화 대비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중 '저출산 고령화 대책 지원시설'을 추가 신설함(안 제20조제2항제6호)
- 나. 공공서비스 수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중 '공공 지원시설'을 추가 신설함(안 제20조제2항제7호)

3. 참고사항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6. 저출산·고령화 대책 지원시설(「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, 제4조부터 제4조의8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, 「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」 제14조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.)
7. 공공지원시설(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.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	말한다.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0조(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)제2항제6호 및 제7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할 목적으로 신설한 것 등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